

제314회 임시회

2012. 9. 11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현삼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,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(안 제6조2)
- 나.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국장 추가 (안 제8조)
- 다.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서면심의, 현지조사 등 반영 (안 제12조)
- 라.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설치 (안 제14조)
- 마.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 반영 (안 제21조)
- 바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에 도 소속공무원 추가 (안 제22조)
- 사.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1조, 제15조, 제20조, 제23조, 제25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등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2. 8. 9 ~ 8. 28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으로 정당성이 인정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